

【 문제-1 】 (30점)

의사 甲에 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丙은 甲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1억 원을 청구하고, 향후치료비는 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개별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하여 총 1억 원을 청구하되,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또한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한편 이 무렵, 甲은 친구 乙과 통모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甲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고, 甲은 乙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답변서 부분이 乙에게 송달되었으며, 甲과 乙은 위 청구 내용과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를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乙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다. 그러자 丙은 甲과 乙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허위의 양도합의가 있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이 사건 등기의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 (1) 丙의 乙에 대한 소(訴)가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검토하십시오. (10점)
- (2) 丙의 乙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전소)에서 丙의 승소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그 뒤 甲에 대해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丁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상대로 전소와 같은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후소)을 제기하였다. 乙은 후소의 변론기일에 후소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하십시오. (10점)
- (3)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전소)에서 甲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丙의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甲)는 원고(丙)에게 위 조정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丙은 甲에 대해 전소에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억 원과 추가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검토하십시오. (10점)

【 문제-2 】 (20점)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X 토지(이 사건 토지)를 甲 소유 건물의 주차장 진출입로로 수년 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乙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펜스(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甲의 주차장 출입을 막았다. 그러자 甲은 제1심 법원에 乙이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甲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이유로, 점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해 乙을 상대로 이 사건 펜스의 제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 (1) 乙은 甲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반소로써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와 반소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甲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적법하게 甲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乙의 반소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2) 제1심 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乙은 즉각 항소하면서, 甲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반소로써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乙의 반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 문제-3 】 (30점)

甲은 마을 모퉁이에 자신의 자동차를 잠시 주차하였는데 그 옆에 기울어져 있던 공작물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자신의 자동차가 파손됨은 물론 인신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甲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공작물의 점유자인 乙을 주위적 피고로, 이것이 인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작물의 공유자인 丙, 丁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 (1) 제1심 법원이 乙에 대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丙, 丁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 (2) 乙에 대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한 경우 甲이 항소심에서 乙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만약 乙에 대한 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다면 소를 취하하지 않은 丙, 丁에 관한 청구 부분이 여전히 항소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4점)
- (3)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丙만이 항소한 경우 그 효력이 타 공동소송인에 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 문제-4 】 (20점)

甲은 수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를 이유로 A노인요양센터(법인이 아님)에서 기거해 오고 있다. 그런데 A노인요양센터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甲은 뜻하지 않은 폐질환에 걸려 투병 중이다. 이에 甲은 현저한 질병 악화 등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 (1) 甲이 소를 제기함에 있어 A노인요양센터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 (2) 甲이 A노인요양센터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 甲에게 유일한 상속인으로 乙이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지위가 수계절차 없이도 乙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법원이 甲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경우 이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0점)